

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1666
----------	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20년 9월 3일
제안자 : 문화체육관광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구제 절차 조항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을 따르고 있으므로 ‘이의신청’이 아닌 ‘이의제기’로 변경함.

2. 수정안의 주요 내용

- ‘부과·징수 및 이의신청’을 ‘부과·징수 및 이의제기’로 수정함(안 제73조제1항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다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73조제1항 중 “이의신청”을 “이의제기”로 한다.

수정안 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	수정안
<p>제73조(과태료의 부과·징수)</p> <p>① 시장이 제72조에 따른 과태료를 <u>부과·징수하는</u> 경우에는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을 따른다.</p> <p>②·③ (생략)</p>	<p>제73조(과태료의 부과·징수등)</p> <p>① ----- ----- <u>부과·징수 및 이의신청을 하려는</u> ----- -----.</p> <p>②·③ (현행과 같음)</p>	<p>제73조(과태료의 부과·징수등)</p> <p>① ----- ----- <u>부과·징수 및 이의제기를 하려는</u> ----- -----.</p> <p>②·③ (개정안과 같음)</p>

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3조제1항 “부과·징수하는”을 “부과·징수 및 이의제기를 하려는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73조(과태료의 부과·징수)</p> <p>① 시장이 제72조에 따른 과태료를 <u>부과·징수하는</u> 경우에는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을 따른다.</p> <p>②·③ (생략)</p>	<p>제73조(과태료의 부과·징수 등)</p> <p>① ----- --- <u>부과·징수 및 이의제기를 하려는</u> ----- ----.</p> <p>②·③ (현행과 같음)</p>